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_ 1p

4.16특별법은 아주 특별해야 한다_ 5p

한국의 재난사례를 통해 본 정부 대응의 기만성_ 8p

세월호 유가족 둘러싼 의혹 3가지, 진실은?_ 12p

4.16특별법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_ 15p

sewolho416.org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주제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정책기획팀장

어두운 바다로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참사의 진상규명.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 7월 19일. 세월호 참사 95일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 8일째,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6일째이다.

어제는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공주사대 부고 2학년 다섯 명의 학생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지 벌써 한해가 지난 것이다. 해병대 캠프 참사는 세월호 참사의 수많은 전조 중 하나였다.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가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292명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502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고, 23명이 희생된 99년 씨랜드 화재 사고 등이 모두 세월호 참사의 예고였다.

사고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고 언제나 책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진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를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350만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토대를 구축하려 한다. 이것만이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성원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희생자 가족들의 힘이 합쳐져 드디어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만들어 졌고 7월 7일 국회에 입법청원되었다.

▲ 7월 15일, 안산 합동분향소에 바쳐진 3,501,266명의 서명

이 특별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야의 특별법안과 다른 점이 많다. 우선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보다 훨씬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했다. 특검과 같은 수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선 핵심적으로 성역없는 조사와 자료에 대한 전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청와대의 황당한 대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는커녕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을 펴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면책하는데 급급했다. 또 청와

대는 YTN을 통해 최초로 세월호 참사를 확인했으며 그 시각은 국가안정보장회의 (NSC)가 청와대 벙커에서 진행중이었는데 세월호 사고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대면보고도 받지 못해 7시간여 동안 제도로 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박대통령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바 있다. 조사 권한 만으로는 성역없는 수사는 불가능하다. 강제수사권이 없으면 이러한 청와대 부실 무능대응에 대한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또한, 청와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를 무시했다. 청와대는 269건 요청한 자료 중 13건만 제출했다. 강제 수사권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수사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수사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이 거세다. 황교안 법무장과도 이에 가세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 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민간 기구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형사사법체계와 배치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에 대한 도전이자 검찰의 영역이 침해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 한번 무너지면 여타의 사건사고에서도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수사권을 부여해 달라고 나설 것이라는 게 검찰과 새누리당의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왜

▲ 새누리당 신임 대표최고위원에 당선된 김무성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인 가족들을 찾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진행된 모든 특검은 위헌이었단 말인가? 특별위원회 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주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수사 및 기소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니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전혀 없다.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가 전례가 없었던 일 아닌가! 또한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엄청난 국민적 공감대 역시 전례가 없다. 특히 지난 5월 19일 [악어의 눈물] 대통령 담화에서도 "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과 특별검사 수사를 제안" 한다고 언급한바 있고, 위헌 소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도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이라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조사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청문회 개최 건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대형재난의 대비와 사후 대응과정을 진상규명했던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하원위원회', 호주의 '빅토리아 산불위

원회’ 도 각각 12차례, 9차례, 7차례의 청문회를 열었다. 진상규명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인적 구성 중요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국회와 대법원,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가족과 야당 추천 몫은 당연히 소수가 될 것이고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면죄부 특별위원회], [무늬만 특별위원회] 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 특별법은 여야가 각각 4명씩 8명의 특위위원을 추천하고 세월호 참사 가족 추천이 8명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한다. 특히 위원장은 가족들이 추천하는 인물중 한사람이 맡는 것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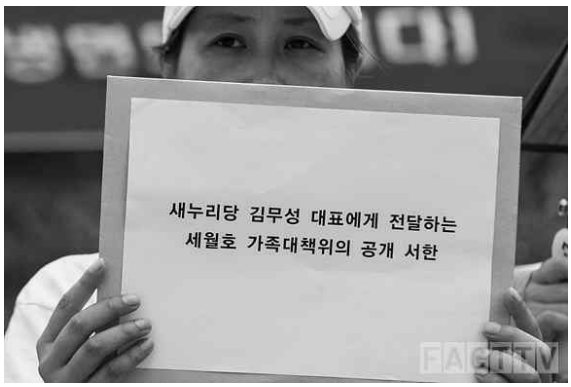

▲ 7월 18일, 유가족들이 새누리당을 찾아 특별법 제정 논의에 책임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에서도 각 당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의 특별법은 다른 법안보다 훨씬 긴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충분한 활동 기간이 보장되어야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상관없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 즉 철도 지하철 화물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 핵발전소,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규제의 문제점 등까지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또 이 특별법안은 참사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징계권한)을 갖추고 있어 참사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기관보고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만을 보호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였고 방청을 원하는 가족들의 참여를 막는가 하면, 7월 2일 해양경찰에 대한 기관보고 시에는 정회 중에 피조사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심지어 희생자 실종자에게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나아가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고 세월호 가족들은 여·야·가족이 참여하는 3자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새누리당만 이를 반대했고 심지어 참관조차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새누리당은 또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 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심지어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세월호 참사 가족과 국민들께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약속했던 7월 16일을 넘어 6월 국회가 폐회되었는데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어제 7.30 재보선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미키마우스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희희낙락 했다. 유족들은 땅을 치며 분노하고 있다.

특별법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희생자 실종자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특별법 제정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국민과 유가족들의 힘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70일만에 350만명의 국민서명을 받고 그 서명을 평일 날 2000여명이 모여 국회 본청 까지 행진해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접수했다. 끊임없이 밀려들어온 국민의 물결. 세월호 유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얘기한다.

살아오면서 데모 한번 구호 한번 외치지 않았다던 가족들이 국회 본청앞에서 8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벌써 6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다. 단식은 체력 저하와 오랜 스트레스로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에서 자칫 위험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만류도 가족들의 의지를 꺽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 스스로 자신의 아이들의 마지막 장면을, 동영상을 국민들께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너무 아픈 결정이었다. 그 결정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가족분들의 이러한 결정은 특별법 제정의 [골든 타임] 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제부터 서울 전역을 돌며 동영상을 틀고, 국민께 호소한다. 특별법을 위해 7월 19일 서울광장을 모여달라고.

왜 우리의 아이들이, 가족들이 스러져 갔는지 그리고 왜 단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누구든 2014년 4월 15일 인천항을 떠나는 또 다른 세월호를 타게 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전과 후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4·16특별법은 아주 특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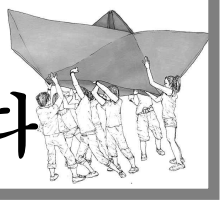

안경호
***전 의문사위원회 조사팀장**

300명이 넘는 아까운 목숨이 바다에 수장되었다.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1, 2항해사와 기관장은 살인죄,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및 유기치상죄로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진도VTS 관련 해경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내용만 보더라도 '416참사' 는 살인사건이다. 동일범에 의한 동일장소와 동일시간에 발생한 300건의 강력 살인사건인 것이다. 위 살인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이 적극 가담하여 은폐, 조작한 사건이기도 하다.

동일장소와 동일시간에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세월호 타살사건' 은 강제수사를 통해서만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참사 원인과 대처 및 구조·수습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법,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까지 이끌어 내려면 특별한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422일 동안 농성을 하면서 만들어낸 국가 조사기구였다. 의문사위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및 실종사건을 조사하였다. 입법과정도 어려웠고 한시조직으로써 조사기간의 제한, 관계기관의 비협조, 미약한 조사권한 등의 이유로 조사활동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별법이지만 조사방법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못했으며, 그나마 고발 및 수사의뢰, 동행명령권, 실지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장기간 농성으로 만들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 시기, 운동권 대학생들을 특수학적 변동자로 분류하여 강제징집시킨 뒤 녹화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의문사위원회는 당시 위 녹화사업을 담당했던 보안사 서모 심사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업무일지' 에 녹화사업 진행현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목격하고 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위 심사과장은 제출을 미루다가 업무일지를 소각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의문사위원회 조사관에게 보내왔는

데, 결국 특수학적변동자에 대한 심사와 활용, 망원 운용, 비용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건은 “불능” 처리되었다.

또한 1984년 육군 7사단 GOP철책근무를 서던 전방소대 유류고 인근에서 가슴에 1발, 머리에 2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허원근 일병 사건은 아직까지도 사인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의문사위원회에서 ‘타살’로 결정을 내려면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자살’로 처리를 하였는데, 의문사 2기 위원회 당시 국방부 특조단에서 타살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임모 상사에게 위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실지조사를 통하여 자료입수를 시도하였지만, 임모 상사가 조사관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워 협박하여 자료를 다시 돌려주는 일이 벌어지면서 위 사건도 “불능” 처리되었다.

결국,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이나 사건 관계인들에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게 주어져야 한다. 눈앞에서 유력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건이 미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소실되어 사건진천이 안된다면 이는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16특별법은 강제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참사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6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질 위원회는 해경을 비롯하여 정부 각 기관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마디로 국정원과 청와대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들 국가기관과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참고인 출석요구부터 관련 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임의수사를 전제로 하지만, 주요 쟁점들 대부분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수사 방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에도 권력기관들은 그들 기관의 출입문 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대통령이 와도 보여줄 수없고, 대한민국이 꺼꾸러져도 자료는 보여줄 수 없다고 버티던 기관도 있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은 다름 아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핵심적인 참고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확보 없이 실체적 진실은 밝혀질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밝히며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과거사 관련 국가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기관들은 대개의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 조항이나 실효성 없는 ‘동행명령제’ 정도를 가지고 조사에 임했다.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해자 면죄부를 주는 조사였다는 비아냥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416특별법은 이전의 특별법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법률이어야 한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성역없이 조

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사권 없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세월호의 비극은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온 국민들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오늘도 진도체육관에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는 과거를 잊었지만 과거는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온다. 세월호참사가 과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희생자들보다 더한 고통을 감수하고 싸우겠다는 각오 없이는 또 과거로 흘러갈 것이고,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자식들의 임종 조차 지켜주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는 부모들이 더는 이 땅에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재난사례를 통해 본 정부 대응의 기만성

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한국은 '재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형사고가 많은 나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겪고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언제까지고 대형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한국의 재난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진상규명을 정부당국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

사고 이후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구성될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는 인적 구성, 수사권 및 기소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해 발생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는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이 사고로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는데, 경찰은 학생들이 교관의 지시에 뒷걸음질 치던 중 갑자기 깊어지는 갯골에 빠진 후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당시 교관과 학생,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갯골과 너울성 파도는 없었다. 의문을 가진 유족들은 몇 번이나 경찰에 현장 검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뿐만 아니다. 유족들은 학교와 여행사 사이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캠프 운영과정의 부실 여부, 태안군과 해경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업체와 관계기관의 유착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관련 수사는 현재까지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는 여전히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최근 명의만 바꿔서 재개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 일어난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태안기름유출사고)에서는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출항을 하고, 충돌 전 몇 번이나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무시하다 유조선과 충돌한 삼성예인선단의 책임의 가장 컸지만, 사고 조사에서 해경은 삼성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산 해양청의 경고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삼성의 조직적 지시 여

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회피했으며, 모든 책임을 선원들에게 한정한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운영을 보람(주)라는 자본금 5,000만 원짜리 영세업체에 맡기고 있었고, 사고의 모든 책임 또한 이 영세 하청업체에게 떠넘겼다. 해경과 검찰수사는 이러한 책임 회피를 적극 인정한 셈이다. 결국 삼성 측은 피해액 7341억 원 중 56억 만을 책임지게 되었다.

▲ 2007년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 기름을 뒤짚어 쓴 철새. 온 국민이 힘을 모은 방제작업으로 복구기간이 짧아졌지만 정작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을 이뤄지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활동 덕분에 간신히 원인규명이 이루어진 사고도 있다. 2000년 대구 지하철 공사 중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붕괴장소를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추락하여 3명이 사망했는데, 교통량이 적은 새벽에 일어나 희생자가 적었지만 만약 낮이나 저녁시간이었다면 대형사고가 될 뻔한 사고였다. 시민단체대책위원회는 대구시에 사고원인규명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기관의 선정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임의로 한국건설기술안전협회에 사고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 협회의 용역조사결과는 붕괴 사고를 기술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상(異常)토압'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평가하였고, 대구시장과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이 평가결과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거해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장의 퇴진까지 요구하며 재조사를 요구한 끝에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의 재용역을 대구시로부터 이끌어냈고 재용역 조사결과 인재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대구시 관계공무원 3명을 구속한다.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사회 소위원회

유가족은 특별위원회 안에 세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진실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치유 기억 소위원회가 그것이다. 새누리당은 소위원회에 대한 안이 아예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셋 중 안전사회 소위원회가 빠져있다.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핵심 소위이다. 유가족들이 이를 구성하기를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를 넘어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재난사례에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할 수 있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노후 선박 교체, 선체 및 운항 관리에 대한 점검 철저, 과적 방지, 승무원 안전교육 강화를 사고 이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그 어느 것도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선령 완화는 계속되어 오히려 노후 선박은 증가했고, 과적 여부를 직접 검사하지 않고 승무원이 불러준 수치대로 기재하는 등 운항 관리는 대충이었고, 승무원 안전교육은 아예 국가가 그 책임을 놓아버리고 해운조합에 일임해버렸다.

94년, 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연달아 붕괴하면서 부실공사방지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실공사 관련자 처벌 강화, 설계 및 감리제도 강

▲ 1996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에도 정부주도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었다. 이는 결국 2014년에 다시 세월호 참사를 가져왔다.

화, 입찰제도 개선, 불법하도급 근절 등 부실공사 재발 방지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전에도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제도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인데, 부실공사 방지는 곧 발주자와 건설업체의 수익하락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고→대책발표→용두사미 종결'의 악순환을 계속했는데, 이 배경에는 건설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국가경쟁력강화' 주장이 있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의 잘못된 규제들을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산업안전분야에도 적용되었고, 결국 사업장 내의 안전문제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책임이므로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논리가 관철된다. 결국 사고가 기억에서 잊힐 즈음에 부실방지 대책은 경쟁력 대책으로 탈바꿈하고 만다. 예컨대 삼풍 사고 직후 구성된 건교부 산하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이 발표한 '부실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이름 그대로 "제도적 대책의 기반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구조적 안전성 제고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미흡했으며 세부 내용 다수가 부실공사 방지와 무관"(대한건축학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99년 씨랜드 화재 사고 이후 정부는 숙박시설을 갖춘 연면적 400㎡ 이상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게 했고, 600㎡ 이상은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는 등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강화했다. 또 아동복지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건축법, 소방법 등이 정비되면서 숙소에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검사는 수련시설 운영자의 모임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행 주체여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수련시설의 40%이상은 검사에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를 받은 수련원 중에서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소방·전기·가스 등 개별 항목의 점검을 빠뜨린 곳도 많았다. 문제의 샌드위치 패널은 올해 초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문제의 원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과거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건설하고, 철저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늬만 특별법인 법을 만들어놓으면, 10년 20년 뒤에 우리는 똑같은 원인이 똑같은 사고를 재발시켰다는 뉴스를 다시 보게 될 지도 모른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책임자처벌의 시작이고, 책임자의 처벌은 기업주들에게 강력한 경고효과가 되어 이후의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낳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형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책임자도 대부분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아니라 현장, 말단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사

람들로 한정이 되었다.

502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고는, 그 사고의 중함을 고려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우선 검토했다. 그러나 백화점 붕괴 전 균열 부분이 나타난 4~5층 위주로 일부만 대피시킨 것은 건물 전체가 붕괴될 것을 사전에 예상했거나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백화점 건물 자체 및 상품의 손실, 인명 살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할 때 백화점 붕괴로 인한 손해가 당일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 등이 살인죄 의율에 배치되는 증거로 제시되어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된다. 오너인 고(故) 이준 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되어 1심에서는 징역 10년 6월, 2심에서 징역 7년 6월, 차남인 이한상(61) 전 사장은 7년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이후 만기출소하였다. 이외에도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이준 회장 일가의 재산 500여억 원은 모두 압류되고 삼풍그룹은 해체되어 한국에서 대형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없어지는 예외적인 사례로 남긴 했지만, 인명피해에 비해 형 자체는 가벼웠다는 평이다.

삼풍백화점은 오너가 처벌되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책임소재가 최고경영주까지 가지 않는다. 대구지하철 사고는 기관사들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기관사 및 관제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4~5년의 금고형을 받았던 데 비해, 사고 직후 물청소를 지시하여 증거인멸혐의를 받았던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등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1인 승무제 아래서 기관사가 혼자 위급상황 대처, 승객대피, 사령교신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나 비상유도등 · 피난로 · 소화설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웠던 점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 회사의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문제의 근본원인까지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사고 이후에도 1인승무제는 개선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무인운전시스템과 무인역사가 확산되고 있다.

최소한의 힘을 보장받는 특별법,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가개조' 운운하며 많은 것이 변화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훼리호 사고를 겪은 김영삼 정부도, 씨랜드 참사를 겪은 김대중 정부도, 대구지하철화재를 겪은 노무현 정부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를 겪은 박근혜 정부도 최대한 자기책임을 축소하려 할 것이고, 재발방지책이 기업의 이윤추구행위를 행여나 건드릴까 전전긍긍하며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 현재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막고자하는 이들에 대항해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힘,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힘을 보장받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난사례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OhmyNews

세월호 유가족 둘러싼 의혹 3가지, 진실은?

'의사자 지정' '특례입학'은 여야가 추진... 유족 "'보상'보다 '진상규명' 우선"

이주영 기자

'특별법으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속내가 빤히 보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을 두고 누리꾼 일부가 반대 여론을 모으고 있다. 유족들이 사고를 빌미로 각종 특혜를 요구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이나 피해 가족 지원책 관련 언론 기사에는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명문대 특례입학까지? 작작 좀 해라'라는 비난성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자신을 6·25 참전 용사의 자손이라고 밝힌 회원의 주도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이 진행 중이다.

▲ 세월호참사 유가족 150여명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특별법 제정관련 여·야·가족 3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보상' 문제로 왜곡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희생자 아버지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인데, 자꾸 본심이 와전되는 것 같아 속상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 '희생 학생 대학 특례입학' 등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의혹①] 유가족들이 먼저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세월호 피해자 전원을 의사자와 의상자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제안한 적이 없다.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마련해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의사상자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3일 당론으로 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겼다. 전해철·부좌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에는 "세월호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해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새정

치연합이 의사자 지정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거는 지난 5월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브리핑 내용이다. 당시 전해철 의원은 사고 피해 지원 총론을 설명하면서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부분은 유가족들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를 두고 '호칭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들이 얘기한 건 의사상자 지정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라면서 "현행법상 명예를 존중하는 방안은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뿐이라 법안을 준비하면서 의사상자라는 호칭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유족들이 이를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사상자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세월호 특별법 여야 태스크포스(TF)는 기존 의사상자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을 '4·16국민안전의인'으로 별도 지정해 명예를 예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지정이 보상에 집중돼 있다면, 4·16국민안전의인 지정에 따른 조치는 명예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혹②] 단원고 피해학생,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피해자인 단원고 학생을 위한 '대학 특례입학' 방안 역시 가족대책위 청원 특별법안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게 유족들의 증언이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세월호 피해 학부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참사로 동생을 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나 수험 준비에 전혀 집중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대입특례'를 달라고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 학부모는 "오히려 우리 아이는 '성적 떨어져서 대학 못 가도 좋으니, (사고로 희생된) 동생에게 안 좋은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한다"라며 "교육청이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특례입학 얘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지지하는 여론이 돌아설까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및 시민들이 15일 세월호 특별법(4.16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촉구 국민서명(350만 1266명)을 들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해 본청 앞에 쌓아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유은혜 의원은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을

두고 '피해 가족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쪽으로 소문이 나 안타깝다"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참사 이후 성적이 급격 하락해도 고2 내신 성적 수준에 맞게 대학 원서를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법안의 골자"라면서 "단원고 3학년은 무조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학을 강제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같은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의혹③]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 서두른다?

가족대책위가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 '국가 책임의 원칙' 정도만 언급된 정도다.

실제로 유가족들은 정부와 보상 문제를 두고 공식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피해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족들이 '1순위'로 요구하는 부분은 진상규명이다. 향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수 있으려면 '조사권'과 '기소권'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십 명의 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곡기를 끊으며 농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 대변인은 "우리는 진상규명 위한 조치를 특별법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지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 같은 보상을 먼저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면서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말한 적 없는 건 적극 해주려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부터 밝혀달라고 했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느냐"라며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조치부터 제대로 마련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의 마음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4.16특별법안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3분이면 알수있다

sewolho416.org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4.16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 1

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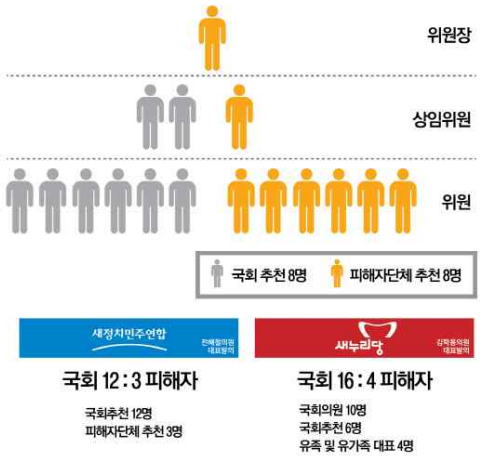

참사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절박함을 우선에 두어
피해자보다 국회 추천 숫자가 더 많이 할당된
타 법안과 달리 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4.16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 2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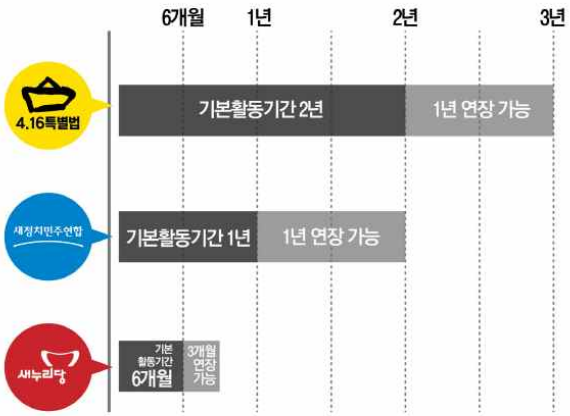

4.16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물론
참사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4.16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 3

특별위원회 내에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

4.16 특별법안은 참사의 진실규명과 기억
그리고 안전사회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이 가능한 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4.16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 4.1

특별위원회에 특검수준의 독립적 수사·기소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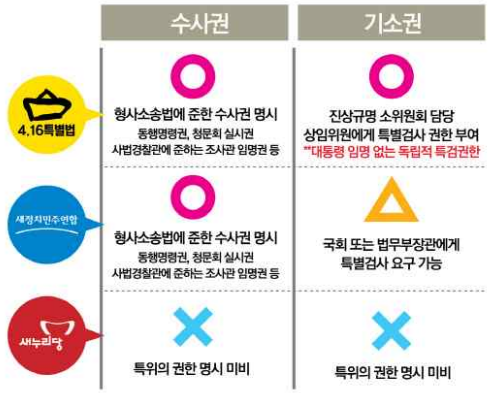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4.16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 4.2

특별위원회에 특검수준의 독립적 수사·기소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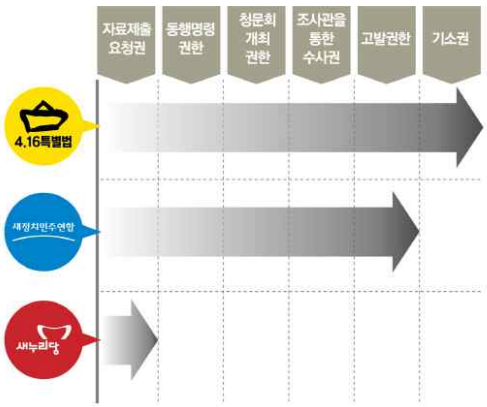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은
의혹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4.16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 5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 보장

4.16특별법안은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하여
다시는 참사가 없는 안전사회를 지향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4.16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 6

유가족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 특례입학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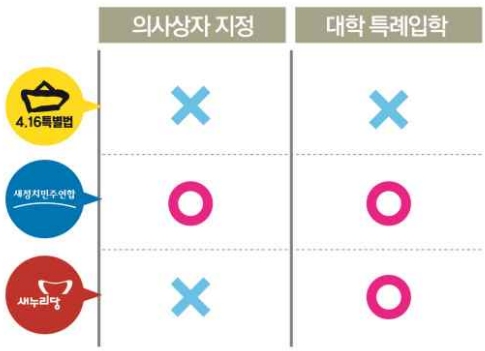

유가족의 특별법안은
오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